여수 웅천 꿈에그린 1단지 입주자모집공고

■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,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.6.30. 입니다. (무주택기간, 나이,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)
■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청약통장의 대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금액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■ 2008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(주거전용면적+주거공용면적)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 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본 아파트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"무주택기간, 부양 가족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"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"청약가점제, 가 적용됩니다.
■ 신청자의 및 요건 등의 기준은"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"이며, 면적은"전용면적"을 기준으로 합니다.
■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조 제2항 단서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개정안 (2016.5.20.)시 적용되었으니, 이제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청약 순위에게 건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상향 요건 완화 : "1. 26-9" 참조으로 건소화
-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: 기존 '무주택세대주'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, 세대주가 아닌 '무주택세대구성원'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(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) 단,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
- 입주자지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: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/ 주택규모변경기간(2년) 및 주택규모 상향시 청약제한 기간(3개월) 폐지
-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: 주택소유 수에 따른 차등 감점 폐지
-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: 기존 90㎡ 이하 →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(예시, 90㎡ 이하 →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,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
※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6.5.20. 개정된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본 아파트는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조1항3호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(여수시)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청약이 가능하며,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(여수시)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.
■ 고령자와 장애인 최대한 우선배정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6.30)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 주택 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대한의 주택 배정을 최한한 당첨자,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게 해당 출퇴 우선 배정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단,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출퇴 배정받을 수 있고,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대등 우선해당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대한이 배정될 수 있음(최대한에 대한 기준은 내용 참조)
■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「주택법, 제7조5 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(여수시) 거주자로 봅니다.
■ 전매금지 및 제한등 제한기간
- 「주택법」제63조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조5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85㎡이하는 3년간, 85㎡초과는 1년간 다른 분양주택 (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,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경우만 해당)에 재당첨이 제한됩니다.
단, 본 아파트는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개정(2012.9.25)으로 바뀌기과열지구 민영주택에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며, 「주택법」제41조2항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10항 제5항 및 제7항 및 제10항 및 제11항 및 제12항 및 제13항 및 제14항 및 제15항 및 제16항 및 제17항 및 제18항 및 제19항 및 제20항 및 제21항 및 제22항 및 제23항 및 제24항 및 제25항 및 제26항 및 제27항 및 제28항 및 제29항 및 제30항 및 제31항 및 제32항 및 제33항 및 제34항 및 제35항 및 제36항 및 제37항 및 제38항 및 제39항 및 제40항 및 제41항 및 제42항 및 제43항 및 제44항 및 제45항 및 제46항 및 제47항 및 제48항 및 제49항 및 제50항 및 제51항 및 제52항 및 제53항 및 제54항 및 제55항 및 제56항 및 제57항 및 제58항 및 제59항 및 제60항 및 제61항 및 제62항 및 제63항 및 제64항 및 제65항 및 제66항 및 제67항 및 제68항 및 제69항 및 제70항 및 제71항 및 제72항 및 제73항 및 제74항 및 제75항 및 제76항 및 제77항 및 제78항 및 제79항 및 제80항 및 제81항 및 제82항 및 제83항 및 제84항 및 제85항 및 제86항 및 제87항 및 제88항 및 제89항 및 제90항 및 제91항 및 제92항 및 제93항 및 제94항 및 제95항 및 제96항 및 제97항 및 제98항 및 제99항 및 제100항 및 제101항 및 제102항 및 제103항 및 제104항 및 제105항 및 제106항 및 제107항 및 제108항 및 제109항 및 제110항 및 제111항 및 제112항 및 제113항 및 제114항 및 제115항 및 제116항 및 제117항 및 제118항 및 제119항 및 제120항 및 제121항 및 제122항 및 제123항 및 제124항 및 제125항 및 제126항 및 제127항 및 제128항 및 제129항 및 제130항 및 제131항 및 제132항 및 제133항 및 제134항 및 제135항 및 제136항 및 제137항 및 제138항 및 제139항 및 제140항 및 제141항 및 제142항 및 제143항 및 제144항 및 제145항 및 제146항 및 제147항 및 제148항 및 제149항 및 제150항 및 제151항 및 제152항 및 제153항 및 제154항 및 제155항 및 제156항 및 제157항 및 제158항 및 제159항 및 제160항 및 제161항 및 제162항 및 제163항 및 제164항 및 제165항 및 제166항 및 제167항 및 제168항 및 제169항 및 제170항 및 제171항 및 제172항 및 제173항 및 제174항 및 제175항 및 제176항 및 제177항 및 제178항 및 제179항 및 제180항 및 제181항 및 제182항 및 제183항 및 제184항 및 제185항 및 제186항 및 제187항 및 제188항 및 제189항 및 제190항 및 제191항 및 제192항 및 제193항 및 제194항 및 제195항 및 제196항 및 제197항 및 제198항 및 제199항 및 제200항 및 제201항 및 제202항 및 제203항 및 제204항 및 제205항 및 제206항 및 제207항 및 제208항 및 제209항 및 제210항 및 제211항 및 제212항 및 제213항 및 제214항 및 제215항 및 제216항 및 제217항 및 제218항 및 제219항 및 제220항 및 제221항 및 제222항 및 제223항 및 제224항 및 제225항 및 제226항 및 제227항 및 제228항 및 제229항 및 제230항 및 제231항 및 제232항 및 제233항 및 제234항 및 제235항 및 제236항 및 제237항 및 제238항 및 제239항 및 제240항 및 제241항 및 제242항 및 제243항 및 제244항 및 제245항 및 제246항 및 제247항 및 제248항 및 제249항 및 제250항 및 제251항 및 제252항 및 제253항 및 제254항 및 제255항 및 제256항 및 제257항 및 제258항 및 제259항 및 제260항 및 제261항 및 제262항 및 제263항 및 제264항 및 제265항 및 제266항 및 제267항 및 제268항 및 제269항 및 제270항 및 제271항 및 제272항 및 제273항 및 제274항 및 제275항 및 제276항 및 제277항 및 제278항 및 제279항 및 제280항 및 제281항 및 제282항 및 제283항 및 제284항 및 제285항 및 제286항 및 제287항 및 제288항 및 제289항 및 제290항 및 제291항 및 제292항 및 제293항 및 제294항 및 제295항 및 제296항 및 제297항 및 제298항 및 제299항 및 제300항 및 제301항 및 제302항 및 제303항 및 제304항 및 제305항 및 제306항 및 제307항 및 제308항 및 제309항 및 제310항 및 제311항 및 제312항 및 제313항 및 제314항 및 제315항 및 제316항 및 제317항 및 제318항 및 제319항 및 제320항 및 제321항 및 제322항 및 제323항 및 제324항 및 제325항 및 제326항 및 제327항 및 제328항 및 제329항 및 제330항 및 제331항 및 제332항 및 제333항 및 제334항 및 제335항 및 제336항 및 제337항 및 제338항 및 제339항 및 제340항 및 제341항 및 제342항 및 제343항 및 제344항 및 제345항 및 제346항 및 제347항 및 제348항 및 제349항 및 제350항 및 제351항 및 제352항 및 제353항 및 제354항 및 제355항 및 제356항 및 제357항 및 제358항 및 제359항 및 제360항 및 제361항 및 제362항 및 제363항 및 제364항 및 제365항 및 제366항 및 제367항 및 제368항 및 제369항 및 제370항 및 제371항 및 제372항 및 제373항 및 제374항 및 제375항 및 제376항 및 제377항 및 제378항 및 제379항 및 제380항 및 제381항 및 제382항 및 제383항 및 제384항 및 제385항 및 제386항 및 제387항 및 제388항 및 제389항 및 제390항 및 제391항 및 제392항 및 제393항 및 제394항 및 제395항 및 제396항 및 제397항 및 제398항 및 제399항 및 제400항 및 제401항 및 제402항 및 제403항 및 제404항 및 제405항 및 제406항 및 제407항 및 제408항 및 제409항 및 제410항 및 제411항 및 제412항 및 제413항 및 제414항 및 제415항 및 제416항 및 제417항 및 제418항 및 제419항 및 제420항 및 제421항 및 제422항 및 제423항 및 제424항 및 제425항 및 제426항 및 제427항 및 제428항 및 제429항 및 제430항 및 제431항 및 제432항 및 제433항 및 제434항 및 제435항 및 제436항 및 제437항 및 제438항 및 제439항 및 제440항 및 제441항 및 제442항 및 제443항 및 제444항 및 제445항 및 제446항 및 제447항 및 제448항 및 제449항 및 제450항 및 제451항 및 제452항 및 제453항 및 제454항 및 제455항 및 제456항 및 제457항 및 제458항 및 제459항 및 제460항 및 제461항 및 제462항 및 제463항 및 제464항 및 제465항 및 제466항 및 제467항 및 제468항 및 제469항 및 제470항 및 제471항 및 제472항 및 제473항 및 제474항 및 제475항 및 제476항 및 제477항 및 제478항 및 제479항 및 제480항 및 제481항 및 제482항 및 제483항 및 제484항 및 제485항 및 제486항 및 제487항 및 제488항 및 제489항 및 제490항 및 제491항 및 제492항 및 제493항 및 제494항 및 제495항 및 제496항 및 제497항 및 제498항 및 제499항 및 제500항 및 제501항 및 제502항 및 제503항 및 제504항 및 제505항 및 제506항 및 제507항 및 제508항 및 제509항 및 제510항 및 제511항 및 제512항 및 제513항 및 제514항 및 제515항 및 제516항 및 제517항 및 제518항 및 제519항 및 제520항 및 제521항 및 제522항 및 제523항 및 제524항 및 제525항 및 제526항 및 제527항 및 제528항 및 제529항 및 제530항 및 제531항 및 제532항 및 제533항 및 제534항 및 제535항 및 제536항 및 제537항 및 제538항 및 제539항 및 제540항 및 제541항 및 제542항 및 제543항 및 제544항 및 제545항 및 제546항 및 제547항 및 제548항 및 제549항 및 제550항 및 제551항 및 제552항 및 제553항 및 제554항 및 제555항 및 제556항 및 제557항 및 제558항 및 제559항 및 제560항 및 제561항 및 제562항 및 제563항 및 제564항 및 제565항 및 제566항 및 제567항 및 제568항 및 제569항 및 제570항 및 제571항 및 제572항 및 제573항 및 제574항 및 제575항 및 제576항 및 제577항 및 제578항 및 제579항 및 제580항 및 제581항 및 제582항 및 제583항 및 제584항 및 제585항 및 제586항 및 제587항 및 제588항 및 제589항 및 제590항 및 제591항 및 제592항 및 제593항 및 제594항 및 제595항 및 제596항 및 제597항 및 제598항 및 제599항 및 제600항 및 제601항 및 제602항 및 제603항 및 제604항 및 제605항 및 제606항 및 제607항 및 제608항 및 제609항 및 제610항 및 제611항 및 제612항 및 제613항 및 제614항 및 제615항 및 제616항 및 제617항 및 제618항 및 제619항 및 제620항 및 제621항 및 제622항 및 제623항 및 제624항 및 제625항 및 제626항 및 제627항 및 제628항 및 제629항 및 제630항 및 제631항 및 제632항 및 제633항 및 제634항 및 제635항 및 제636항 및 제637항 및 제638항 및 제639항 및 제640항 및 제641항 및 제642항 및 제643항 및 제644항 및 제645항 및 제646항 및 제647항 및 제648항 및 제649항 및 제650항 및 제651항 및 제652항 및 제653항 및 제654항 및 제655항 및 제656항 및 제657항 및 제658항 및 제659항 및 제660항 및 제661항 및 제662항 및 제663항 및 제664항 및 제665항 및 제666항 및 제667항 및 제668항 및 제669항 및 제670항 및 제671항 및 제672항 및 제673항 및 제674항 및 제675항 및 제676항 및 제677항 및 제678항 및 제679항 및 제680항 및 제681항 및 제682항 및 제683항 및 제684항 및 제685항 및 제686항 및 제687항 및 제688항 및 제689항 및 제690항 및 제691항 및 제692항 및 제693항 및 제694항 및 제695항 및 제696항 및 제697항 및 제698항 및 제699항 및 제700항 및 제701항 및 제702항 및 제703항 및 제704항 및 제705항 및 제706항 및 제707항 및 제708항 및 제709항 및 제710항 및 제711항 및 제712항 및 제713항 및 제714항 및 제715항 및 제716항 및 제717항 및 제718항 및 제719항 및 제720항 및 제721항 및 제722항 및 제723항 및 제724항 및 제725항 및 제726항 및 제727항 및 제728항 및 제729항 및 제730항 및 제731항 및 제732항 및 제733항 및 제734항 및 제735항 및 제736항 및 제737항 및 제738항 및 제739항 및 제740항 및 제741항 및 제742항 및 제743항 및 제744항 및 제745항 및 제746항 및 제747항 및 제748항 및 제749항 및 제750항 및 제751항 및 제752항 및 제753항 및 제754항 및 제755항 및 제756항 및 제757항 및 제758항 및 제759항 및 제760항 및 제761항 및 제762항 및 제763항 및 제764항 및 제765항 및 제766항 및 제767항 및 제768항 및 제769항 및 제770항 및 제771항 및 제772항 및 제773항 및 제774항 및 제775항 및 제776항 및 제777항 및 제778항 및 제779항 및 제780항 및 제781항 및 제782항 및 제783항 및 제784항 및 제785항 및 제786항 및 제787항 및 제788항 및 제789항 및 제790항 및 제791항 및 제792항 및 제793항 및 제794항 및 제795항 및 제796항 및 제797항 및 제798항 및 제799항 및 제800항 및 제801항 및 제802항 및 제803항 및 제804항 및 제805항 및 제806항 및 제807항 및 제808항 및 제809항 및 제810항 및 제811항 및 제812항 및 제813항 및 제814항 및 제815항 및 제816항 및 제817항 및 제818항 및 제819항 및 제820항 및 제821항 및 제822항 및 제823항 및 제824항 및 제825항 및 제826항 및 제827항 및 제828항 및 제829항 및 제830항 및 제831항 및 제832항 및 제833항 및 제834항 및 제835항 및 제836항 및 제837항 및 제838항 및 제839항 및 제840항 및 제841항 및 제842항 및 제843항 및 제844항 및 제845항 및 제846항 및 제847항 및 제848항 및 제849항 및 제850항 및 제851항 및 제852항 및 제853항 및 제854항 및 제855항 및 제856항 및 제857항 및 제858항 및 제859항 및 제860항 및 제861항 및 제862항 및 제863항 및 제864항 및 제865항 및 제866항 및 제867항 및 제868항 및 제869항 및 제870항 및 제871항 및 제872항 및 제873항 및 제874항 및 제875항 및 제876항 및 제877항 및 제878항 및 제879항 및 제880항 및 제881항 및 제882항 및 제883항 및 제884항 및 제885항 및 제886항 및 제887항 및 제888항 및 제889항 및 제890항 및 제891항 및 제892항 및 제893항 및 제894항 및 제895항 및 제896항 및 제897항 및 제898항 및 제899항 및 제900항 및 제901항 및 제902항 및 제903항 및 제904항 및 제905항 및 제906항 및 제907항 및 제908항 및 제909항 및 제910항 및 제911항 및 제912항 및 제913항 및 제914항 및 제915항 및 제916항 및 제917항 및 제918항 및 제919항 및 제920항 및 제921항 및 제922항 및 제923항 및 제924항 및 제925항 및 제926항 및 제927항 및 제928항 및 제929항 및 제930항 및 제931항 및 제932항 및 제933항 및 제934항 및 제935항 및 제936항 및 제937항 및 제938항 및 제939항 및 제940항 및 제941항 및 제942항 및 제943항 및 제944항 및 제945항 및 제946항 및 제947항 및 제948항 및 제949항 및 제950항 및 제951항 및 제952항 및 제953항 및 제954항 및 제955항 및 제956항 및 제957항 및 제958항 및 제959항 및 제960항 및 제961항 및 제962항 및 제963항 및 제964항 및 제965항 및 제966항 및 제967항 및 제968항 및 제969항 및 제970항 및 제971항 및 제972항 및 제973항 및 제974항 및 제975항 및 제976항 및 제977항 및 제978항 및 제979항 및 제980항 및 제981항 및 제982항 및 제983항 및 제984항 및 제985항 및 제986항 및 제987항 및 제988항 및 제989항 및 제990항 및 제991항 및 제992항 및 제993항 및 제994항 및 제995항 및 제996항 및 제997항 및 제998항 및 제999항 및 제1000항

Ⅰ.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
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여수시 허가민원과 → 제37568호(2016. 6.29) 입주자모집공고 승인
- 공급위치: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, 택지개발지구 관광휴양상업단지지 C4-2블럭 (여수 웅천 꿈에그린 1단지)
- 대지면적: 12,109,000㎡(공동주택 10,843,640㎡, 비주거 1,265,359㎡)
- 공급규모: 지하 2층, 지상29층 37동 총 3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(특별공급 총 73세대 포함)/관촌천 17세대/디자대 31세대/신촌부부 17세대/노부모 부양자 8세대)
- 공급대상

(단위: ㎡, 세대)

구분	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	주택형 (전용면적)	타입	주택형별개략면적 세대별공급면적 주거전용	주거공용	소계	기타공용 (지하주차장포함)	합계	세대별 대지지분	세대수	최하층 우선배정
민영주택	2016000791~01	84.7554	84A	84.7554	26.8731	111.6285	48.5018	160.1303	29.4187	102	4
	2016000791~02	84.9652	84B	84.9652	27.7703	112.7355	48.6161	161.3416	29.4880	78	3
	2016000791~03	100.1241	100A	100.1241	31.0677	131.1918	57.2966	188.4884	34.7532	98	4
	2016000791~04	110.8013	110	110.8013	34.3196	145.1209	63.4067	208.5276	38.4593	52	2
	2016000791~05	130.3166	130	130.3166	43.3261	173.3427	74.5745	247.9172	45.2330	2	0
	2016000791~06	134.5607	134	134.5607	43.5260	178.0867	77.0031	255.0898	46.7062	1	0

■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

(단위: ㎡, 천원)

주택형 (㎡)	타입	동호라인	층별	세대수	분양가 대지비	건축비	부가세	중도금 10%	1회	2회	3회	4회	5회	6회	잔금
								계약시	2016.12.19	2017.05.19	2017.12.19	2018.03.19	2018.07.19	2018.11.19	입주지정일
84.7554	84A	101동 1호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1호	3~7	20	272,000	40,899	231,101	27,200	27,200	27,200	27,200	27,200	27,200	27,200	81,600
		101동 2호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	8~29	82	277,000	40,899	236,101	27,700	27,700	27,700	27,700	27,700	27,700	27,700	83,100
84.9652	84B	101동 3호 102동 3호 103동 3호 104동 3호	3~7	15	272,000	40,995	231,005	27,200	27,200	27,200	27,200	27,200	27,200	27,200	81,600
			8~29	63	277,000	40,995	236,005	27,700	27,700	27,700	27,700	27,700	27,700	27,700	83,100
100.1241	100A	101동 4호 102동 4호 103동 4호 104동 4호	3~7	20	319,000	48,315	246,077	24,608	31,900	31,900	31,900	31,900	31,900	31,900	95,700
			8~29	78	326,000	48,315	252,441	25,244	32,600	32,600	32,600	32,600	32,600	32,600	97,800
110.8013	110	102동 4호 103동 5호	3~7	10	351,500	53,468	270,938	27,094	35,150	35,150	35,150	35,150	35,150	35,150	105,450
			8~29	42	359,500	53,468	278,821	27,882	35,950	35,950	35,950	35,950	35,950	35,950	107,850
130.3166	130	102동 3호 103동 6호	29	2	615,000	62,885	501,923	50,192	61,500	61,500	61,500	61,500	61,500	61,500	184,500
134.5607	134	101동 3호	26	1	636,000	64,993	519,152	51,915	63,600	63,600	63,600	63,600	63,600	63,600	190,800

※ 평형환산방법 : 공급면적(㎡)×0.3025 또는 공급면적(㎡)÷3.3058

■ 공통사항

- 상기 공급금액 주택법 제39조의2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공급가격은 기준으로 여수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의결과에 따라 내역서 주택형별, 층별로 차등을 두어 입사기 적의 조정되어 책정한 금액임. - 상기 공급금액에는 주택법령 공의 소유권 이전등기비용,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. - 상기 세대별 개략면적에는 지하주차장, 관리사무소, 경비실, 주민공동시설 기재상, 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등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. - 상기 공급금액에는 에어컨스, 붙박이장, 가전제품 등 옵션품은 분양대지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. -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별도 계약 체결하여야 함. - 상기 세대별 개략면적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음.
- 상기 공급금액은 합리적 공사비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. - 발코니가 있는 경우 발코니 공구에 해당하는 총,호수별 적용, 총,호수별 산정방법으로 실제 환수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음. - 상기 세대별 개략면적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음.
- 상기 공급금액은 일반 분양 가격과 동일한 가격임. - 중도금은 당해 주택건설지역 (여수시) 거주자 우선 배정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- 중도금 당해 주택건설지역 (여수시)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- 전매은 주택법시행령(제70조)에 의거 입주자 지정일 이후 부터 가능하며 일부 분양주택은 일정기간 전매제한 기간이 있으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상기 공급금액은 중도금 대출 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 일체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. - 상기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지방교육세 등 일체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.
- 분양가는 공사 진행에 따른 물가변동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향후 입주시 정산 하여 차액을 지불하거나 환불하는 조건임. - 상기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지방교육세 등 일체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.

■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

구 분	필수	추가(해당자)	해당서류	발급기준	비 고
공통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	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
	○		인감도장	본인	본인서명서 또는 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
	○		주민등록증	본인	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주민등록번호 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
		○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주민등록번호 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 (민원발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
		○	주민등록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본인과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배우자 본인세대 등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유무확인시 발기한 경우
	○		청약통장순위기입증 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금액은부터 순위 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(applyhome)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 (가입)확인서 발급(국가유공자,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는 해당 사항 없음)
기관추천 특별공급	○		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	본인	여수시 :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기타기관 :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증명서(장애인 복지카드등 기타 서류 첨수 발기) * 국가 유공자는 보훈처 관리번호으로 접수.
다자녀 가구 특별공급	○		주민등록표등본	미혼양 자녀	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	○	주민등록표등본	자녀	
		○	가족관계증명서	자녀	재혼가정의 자녀임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	○	친부모가족증명서	자녀	세대주가 '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,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혼인신고일 확인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및 자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
		○	기본증명서	자녀	출생증명 일자 확인 필요시
	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잉태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(임신진단서제출 (임신진단서제출 (임신진단서제출 이 가능하여 함)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입양의 경우
		○	입양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입양 건물주택에에 비치
		○	비사업자 확인서류	본인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배우자	공고일 이후 발행된서로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
		○	소득증명 서류	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된서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(건, 배우자 본인세대는 배우자 자의 소득증명서류) (표 소득증명서류 참조)
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	○		주민등록표등본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사업주체로부터 확인되지 않는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경우
		○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의	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의 전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
		○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
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청서의 증명 (서명인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제외)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.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도장	청약자	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○		위임장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.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주민등록증	대리인	제외원칙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	○		인장	대리인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음.
※ 신청자의 하도급 인정여부 등은 당사 견본주택 및 청약신청센터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및 부적격 결정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※ 주민등록표등 - 초본 발급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기간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명기하여 발급받고 시기 바람. ※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함.

2. 신청자격 및 공급금액

1. 특별공급

■ 특별공급 공통사항 [기간추첨 / 다자녀 / 신혼부부 /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]

1. 입주자저축 신청자격

- 특별공급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0조, 제40조, 제41조,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며 신청자로 성장해 있는 분들에 한하여 청약신청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
- 공급대상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주택건설지역(여수시)에 거주하지 않은 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(여수시)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.
- 특별공급 주택물량은 「주택법」제38조2항 및 「주택법시행령」제36조10항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조5항 및 제3조6항 및 제3조7항 및 제3조8항 및 제3조9항 및 제3조10항 및 제3조11항 및 제3조12항 및 제3조13항 및 제3조14항 및 제3조15항 및 제3조16항 및 제3조17항 및 제3조18항 및 제3조19항 및 제3조20항 및 제3조21항 및 제3조22항 및 제3조23항 및 제3조24항 및 제3조25항 및 제3조26항 및 제3조27항 및 제3조28항 및 제3조29항 및 제3조30항 및 제3조31항 및 제3조32항 및 제3조33항 및 제3조34항 및 제3조35항 및 제3조36항 및 제3조37항 및 제3조38항 및 제3조39항 및 제3조40항 및 제3조41항 및 제3조42항 및 제3조43항 및 제3조44항 및 제3조45항 및 제3조46항 및 제3조47항 및 제3조48항 및 제3조49항 및 제3조50항 및 제3조51항 및 제3조52항 및 제3조53항 및 제3조54항 및 제3조55항 및 제3조56항 및 제3조57항 및 제3조58항 및 제3조59항 및 제3조60항 및 제3조61항 및 제3조62항 및 제3조63항 및 제3조64항 및 제3조65항 및 제3조66항 및 제3조67항 및 제3조68항 및 제3조69항 및 제3조70항 및 제3조71항 및 제3조72항 및 제3조73항 및 제3조74항 및 제3조75항 및 제3조76항 및 제3조77항 및 제3조78항 및 제3조79항 및 제3조80항 및 제3조81항 및 제3조82항 및 제3조83항 및 제3조84항 및 제3조85항 및 제3조86항 및 제3조87항 및 제3조88항 및 제3조89항 및 제3조90항 및 제3조91항 및 제3조92항 및 제3조93항 및 제3조94항 및 제3조95항 및 제3조96항 및 제3조97항 및 제3조98항 및 제3조99항 및 제3조100항 및 제3조101항 및 제3조102항 및 제3조103항 및 제3조104항 및 제3조105항 및 제3조106항 및 제3조107항 및 제3조108항 및 제3조109항 및 제3조110항 및 제3조111항 및 제3조112항 및 제3조113항 및 제3조114항 및 제3조115항 및 제3조116항 및 제3조117항 및 제3조118항 및 제3조119항 및 제3조120항 및 제3조121항 및 제3조122항 및 제3조123항 및 제3조124항 및 제3조125항 및 제3조126항 및 제3조127항 및 제3조128항 및 제3조129항 및 제3조130항 및 제3조131항 및 제3조132항 및 제3조133항 및 제3조134항 및 제3조135항 및 제3조136항 및 제3조137항 및 제3조138항 및 제3조139항 및 제3조140항 및 제3조141항 및 제3조142항 및 제3조143항 및 제3조144항 및 제3조145항 및 제3조146항 및 제3조147항 및 제3조148항 및 제3조149항 및 제3조150항 및 제3조151항 및 제3조152항 및 제3조153항 및 제3조154항 및 제3조155항 및 제3조156항 및 제3조157항 및 제3조158항 및 제3조159항 및 제3조160항 및 제3조161항 및 제3조162항 및 제3조163항 및 제3조164항 및 제3조165항 및 제3조166항 및 제3조167항 및 제3조168항 및 제3조169항 및 제3조170항 및 제3조171항 및 제3조172항 및 제3조173항 및 제3조174항 및 제3조175항 및 제3조176항 및 제3조177항 및 제3조178항 및 제3조179항 및 제3조180항 및 제3조181항 및 제3조182항 및 제3조183항 및 제3조184항 및 제3조185항 및 제3조186항 및 제3조187항 및 제3조188항 및 제3조189항 및 제3조190항 및 제3조191항 및 제3조192항 및 제3조193항 및